

의안 번호	제2549호~제2552호
----------	---------------

2024. 10. 23.(수) 10:00
제364회 임시회 제1차 행자위

검 토 보 고 서

안건 : 4건(개정안 4)



행정자치위원회
전문위원 백 윤 석

목 차

-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
- 장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
-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
-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549호
- 제출일자 : 2024. 10. 10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(총무과장)
- 회부일자 : 2024. 10. 11.

2. 제안이유

- 장성군 BI가 변경됨에 따라 형태 및 의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변경된 BI의 형태 및 의미 반영(안 제3조제3호, 별표 3)

4. 관련법령

-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 BI가 변경됨에 따라 형태 및 의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,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550호
- 제출일자 : 2024. 10. 10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(민원봉사과장)
- 회부일자 : 2024. 10. 11.

2. 제안이유

- 건축물 해체 허가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과도한 규제 정비 의견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군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완화(안 제9조제1항)
 - (현행) 건축물 대지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설치된 버스정류장, 횡단보도
 - (개정)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 1.5배 이내의 버스정류장,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. 다만, 높이 5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.

4. 관련법령

- 「건축물관리법」 제30조제2항(건축물 해체의 허가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허가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과도한 규제 정비 의견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군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 것으로써,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551호
- 제출일자 : 2024. 10. 10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(주민복지과장)
- 회부일자 : 2024. 10. 11.

2. 제안이유

-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, 사회복지 증진 및 노인·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(안 제5조의2)
-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➡ (개정) 2029년 12월 31일

4. 법적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, 사회복지증진 및 노인·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써,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552호
- 제출일자 : 2024. 10. 10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(세무회계과장)
- 회부일자 : 2024. 10. 11.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 완화 적용과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용어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공유재산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금액 변경(안 제63조)
- 법령-자치법규 간 통일성 확보 및 장애인 비하 용어 개선(안 제47조 및 별표)
- (현행) 장애자용 화장실 ⇨ (개정) 장애인용 화장실

4. 법적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시행령 제81조(변상금)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(장애인의 정의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 완화 적용 및 법령-자치법규 간 통일성 확보 및 장애인 비하 용어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,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

의안 번호	제2553호
----------	--------

2024. 10. 24.(목) 10:00
제364회 임시회 제1차 산건위

검 토 보 고 서

- 안건 : 1건(제정 조례안 1)



산업건설위원회
전문위원 변혜영

목 차

□ 장성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	3
--	---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553호
- 제출일자 : 2024. 10. 10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(재난안전과)
- 회부일자 : 2024. 10. 11.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에 배분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특별회계의 목적 (안 제1조)
-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(안 제2조·제3조)

4. 법적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(시·군 조정교부금), 「지방세법」 제141조(목적)
- 「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」 제5조(세출)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에 배분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-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.

6. 첨부서류 : 생략